

□□■ 새움터소개 및 활동

□□■ 성매매여성들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 전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새움터 자원활동가 모임

일시: 2004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이대 Posco관 51호

□■ 새옴터소개 및 활동 ■□

1. 새옴터 연혁

- 1996년 11월 : 새옴터 창립 (동부천시 중양동)
- 1997년 5월 : 직업재활 프로그램 실시 (허브재배, 판매, 전업상담)
- 1998년 7월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제1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위 선정
- 1999년 1월 :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가입
- 1999년 5월 : 헤이그 세계평화회의 참가 (한국 기지촌 여성 실태 발표)
- 1999년 8월~12월 : 경기도 기지촌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 1999년 10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선정 (기지촌 여성 직업재활 프로그램)
- 2000년 9월 :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 발생 (5명 사망)
- 2000년 9월 :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00년 10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선정 (기지촌 여성 직업재활 프로그램)
- 2001년 6월 : 평택 새옴터 설립
- 2001년 7월 : 평택 새옴터 부설 여성복지상담소 개소
- 2001년 10월 :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주여성인권연대 공동 개최, 4개국 100여명 참가)
성매매 방지 특별법 국회청원
- 2001년 11월 : 고정희 자매상 수상
- 2002년 2월 : 군산시 개북동 화재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 2002년 3월 : 평택역앞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일명 썸리)에 DROP-IN CENTER 개소,
새옴터 부설 썸터 개원
- 2002년 4월 : 미국 의회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한 인신매매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함.
- 2002년 6월 : 대명동 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 2002년 8월 : 직업재활센터 작품전시회 '언니들의 내음'개최 (인사동 관훈갤러리)
- 2003년 6월 : 새옴터 부설 직업재활 상담소 개소
- 2003년 7월 : 성매매피해여성 자립 창업 기금 마련 콘서트 '언니에게 희망을' 개최
(연세대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 성매매피해여성 종합지원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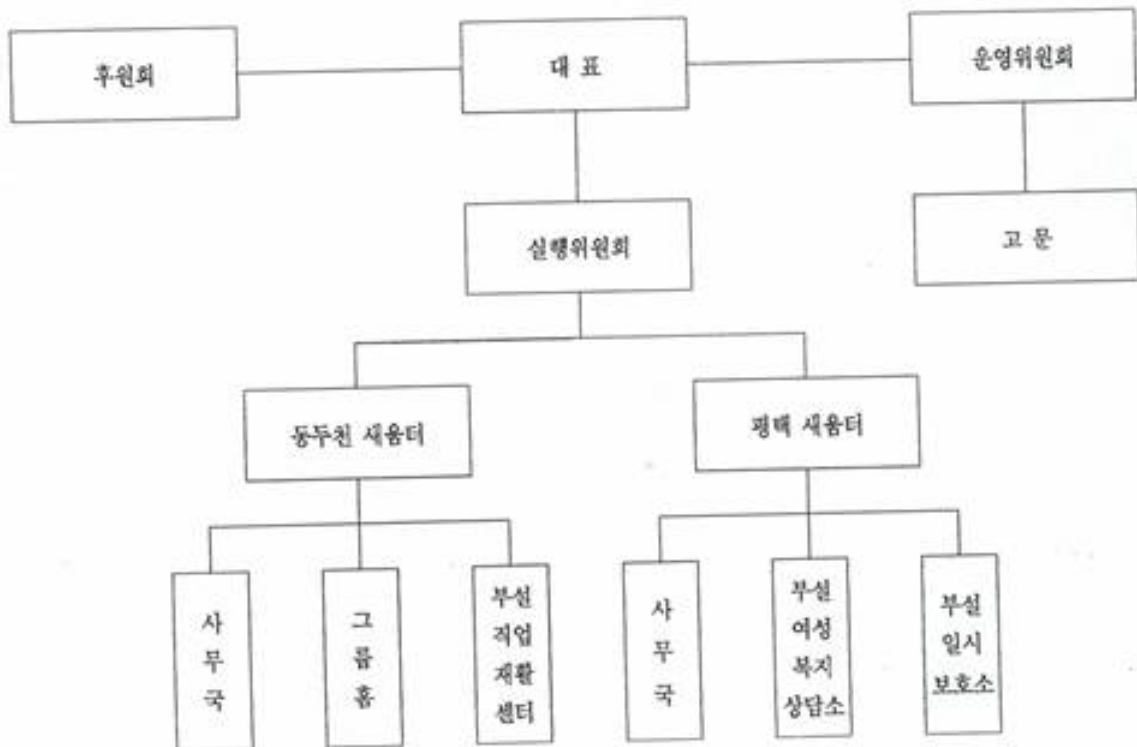
구조 or 신고 → 일시보호 → 직업재활 → 그룹홈 → 자립지원

법률지원 기술교육

의료지원 자녀문제

← 개인, 집단, 가족, 상담상담 → 법, 정책대안, 사회인식

2. 조직 및 직원체계



3.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사업부분	사업내용
정 책	기지촌 지역 및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을 위한 정책 연구
	범죄 피해 여성 구조 및 지원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연대
	희보 발간
	자원활동가 관리
	출판사업 (관련 서적, 자료집 등)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의료 / 법률 상담
상 담	긴급 생계비 지원
	급식 지원
	일시 보호
	집단 상담
	일자리 제공
여 성	기술 교육
	심리 상담
	정보 제공
	방과후 보육
아 동	장학금 / 교육비 지원
	아동 / 학부모 상담
	상급학교 진학 지원
	대학생 기지촌 활동
교 육	강연 및 다큐멘터리 상영

4. 새움터 활동

* 직업재활센터

-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종합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룸으로써 실질적인 탈성매매를 지원한다. 직업재활상담, 동료교육, 취업정보제공, 일자리제공, 기술교육, 법률지원, 의료지원, 긴급보호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매에서 겪은 폭력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극복하고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 우리들의 목소리로 (성매매피해여성 심포지엄)

2003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아동들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피해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 및 성매매 방지정책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욕구 등을 생생하게 사회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함으로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 언니들에게 희망을 (창업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2003년 7월 19일 늦은 7시 연세대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성매매피해여성자립·창업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언니에게 희망을' 진행하여 탈성매매피해여성들의 창업기금을 마련하였다.

*** 탈성매매종합지원사업**

인신매매나 빛의 굴레 등으로 인해 성노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구조하며 포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성적 착취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룹 홈**

중장기섭터를 마련하여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과 직업재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들의 탈성매매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 전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1) ■□

김현선(새움터 대표)

I. 연구의 중요성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북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잇따라 밝혀지고, 2001년 7월 12일에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가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매매춘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 이에 대한 근거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경험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산대명동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현실이었다.³⁾

포주는 건물을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으로 나누어 놓고, 모든 창문에 두꺼운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출입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놓고, 감금한 여성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전부 가로채서 착취하였다. 포주가 시키는

1) 본 글은 다음의 두 가지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새움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매매피해여성의 전국적인 실태에 관한 연구(김현선(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및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경기도지역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새움터(2001),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이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10쪽.

3) 배금자(2002), 대명동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종합준비서면, 5-8쪽.

대하지 않는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섬지역으로 인신매매 되었다. 병원에 가거나 목욕탕에 갈 때에도 항상 감시인이 따라다녔다.

성매매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언론을 통해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며 공창제를 주장하였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아내가 없거나 밑입국한 외국 노동자들 중 성욕을 못 참는 남자들 때문에 윤락가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필요악으로서의 공창지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창제의 제일 큰 목적을 '미성년자 윤락을 근절하고 성인 노예매춘을 없애 윤락녀들을 보호해주며, 공창이 아닌 지역에서는 모든 여대생, 주부, 학생들의 매춘을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창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규제형태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것으로서 일부 유럽국가의 체계를 받아들여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구획화를 실시하고, 성매매여성들의 호객행위를 처벌하는 대신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여 허용하자는 의견이다.⁴⁾

그러나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오히려 공창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이 조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연구자로 참여하여 30명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응답자들의 96.7%가 공창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성매매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포주의 인권착취가 줄어들기는커녕 여성들은 더 심각한 성매매와 폭력, 착취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가 직접 특정지역을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태국, 터키, 미국, 잠비아의 475명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의 76%가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 이유로서 응답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킬 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며, 특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거나 직업화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님을 제시한다.

위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무시하거나 외면해왔지만,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구타나 강간, 감금, 인신매매 등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

II. 연구방법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는 2001년 1월에서 2001년 5월 사이에 새움터⁷⁾의 현장지원서비

4) Gruen, L. & Panichas, G.E.(1997), Sex morality and the law, Routledge, 110쪽.

5) 김예란, 김현선, 정신목(2001),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새움터, 80쪽.

6) Farley, M. & Baral, L.(1998),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s, 12쪽.

7) 새움터는 동두천시의 기지촌 및 평택시의 기지촌, 평택역 앞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사창가)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단체이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권리옹호활동과 전문적인 사

스와 피해신고,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 중에서, 마지막 성매매업소의 경험이 1년을 넘지 않는 여성들로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여성 100명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 설문지는 연구자가 만들었으며,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학적 특성 및 성매매 유입연령 및 경로, 경험한 성매매의 유형 및 지역, 법률적인 문제, 성매매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유무와 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이 설문지는 면접자가 상담을 통해 성매매의 피해에 대한 진술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다.

두 번째 설문지는 Farly와 동일한 척도⁸⁾이며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매매 이전의 신체적 폭력과 강간의 경험, 성매매업소에 있는 동안의 신체적 폭력과 강간, 건강문제, 탈성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이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였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1) 연령 및 거주지

<표 1>과 같이, 응답자들의 연령은 16세에서 59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31.79세이고, 표준편차는 12.25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가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19세가 19%, 30-39세가 16%, 40-49세가 15%, 50-59세가 11%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전국의 16개 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표 2>와 같이 경기도(26%), 서울특별시(16%), 충청북도(8%), 전라남도(8%)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 현재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합계
빈 도(명)	19	39	16	15	11	100
누적퍼센트(%)	19.0	58.0	74.0	89.0	100.0	100.0
평균연령(세)	18.79	24.59	35.31	46.80	54.18	31.79
표 준 편 차	0.71	2.81	2.33	2.27	2.64	12.25
연령범위(세)	16-19	20-29	31-39	42-49	51-59	16-59

회복지적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로서 전국으로부터 성매매피해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상담제공,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8) Farley, M. & Baral, L.(1998), 10쪽.

<표 2> 현재연령별 거주지역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강원도	0(0.00)	1(2.56)	1(6.25)	3(20.00)	0(0.00)	5(5.00)
경기도	6(31.58)	13(33.33)	3(18.75)	1(6.67)	3(27.27)	26(26.00)
경상남도	1(5.26)	2(5.13)	0(0.00)	0(0.00)	2(18.18)	5(5.00)
경상북도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광주광역시	1(5.26)	1(2.56)	0(0.00)	1(6.67)	0(0.00)	3(3.00)
대구광역시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전광역시	0(0.00)	1(2.56)	0(0.00)	1(6.67)	0(0.00)	2(2.00)
부산광역시	0(0.00)	4(10.26)	1(6.25)	0(0.00)	1(9.09)	6(6.00)
서울특별시	3(15.79)	3(7.69)	4(25.00)	5(33.33)	1(9.09)	16(16.00)
울산광역시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인천광역시	0(0.00)	1(2.56)	3(18.75)	1(6.67)	0(0.00)	5(5.00)
전라남도	0(0.00)	4(10.26)	2(12.50)	0(0.00)	2(18.18)	8(8.00)
전라북도	0(0.00)	3(7.69)	1(6.25)	0(0.00)	0(0.00)	4(4.00)
제주도	2(10.53)	0(0.00)	1(6.25)	1(6.67)	1(9.09)	5(5.00)
충청남도	3(15.79)	0(0.00)	0(0.00)	1(6.67)	1(9.09)	5(5.00)
충청북도	3(15.79)	4(10.26)	0(0.00)	1(6.67)	0(0.00)	8(8.00)
합계	19	39	16	15	11	100

(%)

2) 응답자들의 면접시 상황

응답자들은 <표 3>과 같이 새옴터 일시보호센터나 가족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여성(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26%), 탈성매매 후에 취업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여성(23%), 성매매업소에서 도망쳐서 숨어 지내는 여성(21%), 성매매 업소로부터 긴급 구조된 상태의 여성(3%)이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26%)보다 최근 1년 이내에 성매매업소로부터 탈출하거나 구조된 여성들(74%)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 면접시 응답자들의 상황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3(15.79)	7(17.95)	4(25.00)	9(60.00)	3(27.27)	26(26.00)
긴급구조	1(5.26)	2(5.13)	0(0.00)	0(0.00)	0(0.00)	3(3.00)
도망쳐서 숨어있다.	7(36.84)	13(33.33)	1(6.25)	0(0.00)	0(0.00)	21(21.00)
포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8(42.11)	15(38.46)	4(25.00)	0(0.00)	0(0.00)	27(27.00)
탈성매매의 일반화상태(취업)	0(0.00)	2(5.13)	7(43.75)	6(40.00)	8(72.73)	23(23.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

응답자들의 마지막 업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면접당시 일하고 있던 업소유형을, 업소에서 도망친 응답자들은 마지막 업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사창가(29%) 및 기지촌(29%)과 같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업소(5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란주점(14%), 티켓다방(13%), 유흥주점(11%) 순이었다.

<표 4> 연령별 마지막업소 유형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유흥주점	1(5.26)	7(17.95)	0(0.00)	3(20.00)	0(0.00)	11(11.00)
단란주점	6(31.58)	8(20.51)	0(0.00)	0(0.00)	0(0.00)	14(14.00)
룸싸롱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티켓다방	5(26.32)	2(5.13)	4(25.00)	2(13.33)	0(0.00)	13(13.00)
기지촌	0(0.00)	1(2.56)	7(43.75)	10(66.67)	11(100.00)	29(29.00)
사창가	7(36.84)	17(43.59)	5(31.25)	0(0.00)	0(0.00)	29(29.00)
이발소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보도방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나이트클럽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

2. 성매매 실태

1) 유입연령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평균유입연령은 18.9세이고, 표준편차는 3.64세이다. 응답자들 중 73%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된다. 그리고 13세에서 2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되는 응답자들은 98%에 이른다.

<표 5> 유입연령과 종사기간

	현재연령					합계
	10-19	20-29	30-39	40-49	50-59	
19세 이전에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수*(%)	19(100.00)	21(53.85)	11(68.75)	12(80.00)	10(90.91)	73(73.00)
29세 이전에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수*(%)	19(100.00)	39(100.00)	14(87.50)	15(100.00)	11(100.00)	98(98.00)
유입연령의 범위**	13-18	13-26	13-35	16-23	16-26	13-35
평균유입연령**(SD)	16.79(1.55)	19.49(3.14)	20.81(6.32)	18.73(1.79)	18.00(2.90)	18.91(3.64)
종사기간의 범위*** (년)	1-6	0.5-14	3-20	24-31	25-40	0.5-40
평균종사기간***(SD)	2.00(1.45)	5.04(3.55)	14.25(5.71)	27.87(2.56)	35.91(4.50)	12.76(12.38)

*, 명, **, 세, ***, 년

위의 조사결과는 성매매가 대부분 미성년시기나 성년초기부터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매매의 위험이 미성년후기나 성년초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많이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즉 여성들의 성인사회가 억압적인 폭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연령별 평균종사기간을 볼 때,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기간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매매에 유입된 초기, 선불금의 액수가 작을 때, 보호자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거나, 성공적으로 도망치지 못했다면, 응답자들은 늘어난 빛의 굴레에 묶여서 장기간 성매매에 매여있어야 했다.

2) 성매매유입경로

성매매유입경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와 같다.

9) Herman, J.(1997), 61쪽.

<표 6> 성매매업소 유입경로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직업소개소	2(10.53)	12(30.79)	4(25.00)	0(0.00)	0(0.00)	18(18.00)
비소개소	1(5.26)	2(5.13)	0(0.00)	0(0.00)	0(0.00)	3(3.00)
인신매매조직	2(10.53)	1(2.56)	1(6.25)	3(20.00)	1(9.09)	8(8.00)
개인 인신매매자	3(15.79)	5(12.82)	2(12.50)	6(40.00)	7(63.64)	23(23.00)
남자친구	1(5.26)	0(0.00)	1(6.25)	0(0.00)	0(0.00)	2(2.00)
종업원을 통한 업주의 모집활동	5(26.32)	8(20.51)	0(0.00)	2(13.33)	1(9.09)	16(16.00)
사기광고	5(26.32)	11(28.21)	8(50.00)	4(26.67)	2(18.18)	30(30.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

응답자들이 성매매로 유입된 경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사기광고(30%)였다. 이러한 사기광고는 신문이나 잡지, 공공장소의 화장실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실직한 여성들은 빈곤 때문에 이러한 사기광고에 취약하였고, 모집인들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넘어갔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 개인 인신매매자(23%)들이다. 이들은 포주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비공식적으로 모집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하다. 업소 주변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 떠끼나 폭력배일수도 있고, 미장원이나 카페, 옷가게의 주인일 수도 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일정한 소개비를 받는데,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소개비의 액수도 매우 다양하다. 소개비 대신 자신의 가게의 물건을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받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주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물건 구입을 강요한다. 포주는 피해여성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나중에 여성들이 도망을 치거나 다른 업소로 팔렸을 때 결국 여성들이 갚을 돈을 남게 된다. 즉,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신매매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도 성적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있다(18%). 직업소개소는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도방을 차려놓고 직접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자신의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친구들을 유인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16%에 이른다.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주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도 8%에 이르며, 직업소개소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행위를 하는 비소개소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도 3%나 된다. 남자친구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업소로 팔렸던 여성들도 2%였다.

3) 성매매업소의 유형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성매매에 유입된 후 업주나 소개업자에 의해 계속 다른 업소로 팔려 다녔다. <표 8>에서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들이 인신매매 되는 업소의 총수는 4개 이상이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보통 성매매에 유입된 지 6개월에서 1년이면 티켓다방부터 사창가까지 대부분의 성매매업소 유형들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빈번한 인신매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

첫째, 포주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포주는 다른 성매매업소로부터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갚아주고 여성들을 사온 후에 몇 개월만 성매매를 시키면 빚을 갚은 돈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게 된다. 그런 다음에 전 업소에 갚아준 빚의 액수를 불러서 다른 업소로 팔아버린다. 이런 인신매매는 포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 때문에, 포주들은 지속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사고판다.

둘째는 소개업자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소개업자들은 여성들을 계속 인신매매 함으로써 막대한 소개비수입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연령이 적은 여성들일수록 소개비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채무는 처음에 50~200만원이었지만,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천만 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빚은 여성들을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빚 중에서 피해여성들이 직접 받아 사용한 금액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소개비나 벌금 등으로 늘어난 액수였다.

업주들이 빚의 액수를 불리는 방법은 매우 교묘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결근하는 경우, 월급의 30분의 1이 아닌, 하루에 이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액수만큼의 벌금을 내야 했다. 그 액수가 가장 적은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25~60만원이고 가장 많은 사창가의 경우에는 100~150만원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단 하루의 휴일조차 없는 업소들도 많아서 결근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벌금규정만으로도 빚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표 7> 연령별 경험한 성매매업소의 수

	현재연령		
	10-19	20-29	30-39
성매매업소수의 범위(개)	1-22	2-26	4-50
평균 성매매업소수(SD)	7.16(5.55)	10.82(6.15)	22.38(13.53)

<표 8>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들이 경험한 성매매업소의 수

	10-29세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의 수	15
경험하는 업소수 평균(SD)	4.07(0.61)
경험하는 업소수의 범위	1-8

응답자들이 경험한 성매매업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성매매업소의 유형은 유흥주점(71%)과 티켓다방(62%)이었고, 그 다음이 사창가(59%)였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업소의 유형은 곧 업소의 수가 더 많고 성구매자들의 수요가 더 많은 유형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성매매업소의 대부분이 사창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보다 많은 수의 유흥주점과 티켓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숙박업소(45%)나 안마시술소(10%), 이발소(9%) 등의 성매매도 심각했다.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는 인근의 주택가에 숙소를 얻어놓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을 관리하는 **보도방** 성매매(32%)도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도방의 포주들은 수명에서 수십명까지 성매매피해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근의 성매매업소에 출퇴근을 시키기도 하고, 광고지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구매자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미성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성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공급받는 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보도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성매매업소의 유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업소유형이 티켓다방이라는 것은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티켓다방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보통 30대 이상의 여성들을 고용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10대들로 바뀌었다. 이것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단속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고 18세부터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티켓다방에 미성년자들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법률들의 연령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경찰과 지자체공무원들이 성매매업소를 사창가로 협소하게 보면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티켓다방과 같은 업소들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는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들이 유입되는 업소유형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10대는 티켓다방(63.16%)에 주로 유입되어 있었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다양한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성매매에 고용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연령대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응답자들은 빈번한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결국 사창가나 기지촌과 같은 집결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응답자들은 사창가나 기지촌으로 팔려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성매매업소 종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한 채무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업주가 시키는 대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다. 40대 이상이 되면, 응답자들은 기지촌이나 지방의 티켓다방, 맥주·양주집과 같이 고연령의 여성들을 고용하는 업소로 팔려가게 된다.

<표 9> 연령별 경험한 성매매업소의 유형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유흥주점	9(47.37)	29(74.36)	13(81.25)	11(73.33)	9(81.82)	71(71.00)
단란주점	10(52.63)	19(48.72)	6(37.50)	6(40.00)	0(0.00)	41(41.00)
룸싸롱	4(21.05)	20(51.28)	9(56.25)	4(26.67)	0(0.00)	37(37.00)
티켓다방	12(63.16)	22(56.41)	13(81.25)	11(73.33)	4(36.36)	62(62.00)
기지촌	0(0.00)	6(15.38)	10(62.50)	14(93.33)	10(100.00)	40(40.00)
사창가	9(47.37)	21(53.85)	13(81.25)	7(46.67)	9(81.82)	59(59.00)
이발소	0(0.00)	2(5.13)	5(31.25)	1(6.67)	1(9.09)	9(9.00)
한마시술소	0(0.00)	4(10.26)	2(12.50)	4(26.67)	0(0.00)	10(10.00)
보도방	8(42.11)	18(46.15)	4(25.00)	2(13.33)	0(0.00)	32(32.00)
요정	2(10.53)	7(17.95)	1(6.25)	1(6.67)	5(45.45)	16(16.00)
나이트클럽	2(10.53)	7(17.95)	0(0.00)	3(20.00)	4(36.36)	16(16.00)
숙박업소	4(21.05)	16(41.03)	12(75.00)	9(60.00)	4(36.36)	45(45.00)
카페	0(0.00)	1(2.56)	1(6.25)	0(0.00)	0(0.00)	2(2.00)

(%)

4) 법적 문제

<표 10>와 같이, 응답자들의 52%가 법적 문제를 호소했다. 이 응답자들의 20%가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때문에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본인이나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15%는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고소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업주나 소개업자의 고소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여성도 3%나 되었다. 7%의 응답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서 조사를 받고, 쌍벌죄로 처벌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의 제 4조와 제 20조에는 '윤락알선, 강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협조하는 자의 윤락여성에 대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1961년 이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¹⁰⁾ 따라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여성들과의 채무관계는 원인무효가 되며, 형사나 민사를 통해 이 빚을 받아내려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여성들이 도망을 치면, 업주나 소개업자들은 경찰서에 이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매매

10) 배금자, 2002년 2월 22일자 국민일보 칼럼.

업소의 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소를 성매매관련 범죄로 의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직업안정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관련한 고소인의 위법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포주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이 여성들을 찾아내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동시에 경찰서 앞에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에게 끌려가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사기죄나 윤락행위로 인한 전과를 가지게 되었고, 정부에 벌금을 내야 했으며, 업소로 끌려간 후에는 도망친 기간에 대한 벌금으로 수천만 원 빚이 얹혀진 상태에서 더 심각한 업소로 팔리곤 했다. <표 11>과 같이, 응답자들 중에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업주나 소개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경찰에 긴급체포가 되거나, 전과를 가지게 된 응답자들은 40%에 달했다. 전과의 종류는 사기, 윤락행위위반, 절도, 폭력, 마약 등이었다.

<표 10> 면접당시 법적 지원을 요청한 응답자들의 문제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업주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협박	3(18.75)	13(41.94)	2(50.00)	0(0.00)	0(0.00)	18(34.62)
업주와 소개업자의 협박	0(0.00)	2(6.45)	0(0.00)	0(0.00)	0(0.00)	2(3.85)
업주의 사기죄 고소협박	4(25.00)	5(16.13)	1(25.00)	1(100.00)	0(0.00)	11(21.15)
업주와 소개업자의 고소협박	0(0.00)	4(12.90)	0(0.00)	0(0.00)	0(0.00)	4(7.69)
업주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함	3(18.75)	4(12.90)	0(0.00)	0(0.00)	0(0.00)	7(13.46)
업주의 사기죄 고소로 기소중지당함	0(0.00)	1(3.23)	0(0.00)	0(0.00)	0(0.00)	1(1.92)
소개업자의 사기죄 고소로 기소중지당함	2(12.50)	0(0.00)	0(0.00)	0(0.00)	0(0.00)	2(3.8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처벌의 위험	4(25.00)	2(6.45)	1(25.00)	0(0.00)	0(0.00)	7(13.46)
합 계	16	31	4	1	0	52(100.00)

(%)

<표 11> 성매매의 결과로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경험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사기전과	0(0.00)	0(0.00)	0(0.00)	1(20.00)	0(0.00)	1(2.50)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전과	4(44.44)	5(35.71)	2(22.22)	0(0.00)	2(66.67)	13(32.50)
사기죄 긴급체포의 경험	1(11.11)	2(14.29)	2(22.22)	0(0.00)	0(0.00)	5(12.50)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험	3(33.33)	5(35.71)	4(44.44)	3(60.00)	1(33.33)	16(40.00)
절도전과	1(11.11)	1(7.14)	0(0.00)	0(0.00)	0(0.00)	2(5.00)
폭력전과	0(0.00)	1(7.14)	0(0.00)	0(0.00)	0(0.00)	1(2.50)
마약전과	0(0.00)	0(0.00)	1(11.11)	1(20.00)	0(0.00)	2(5.00)
합 계	9	14	9	5	3	40

(%)

3.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

<표 12>와 같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당하는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응답자들의 96%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성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표 12>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경험한 폭력

	10-19	20-29	현재연령 30-39	40-49	50-59	합계
신체적 위협	16(84.21)	34(87.18)	16(100.00)	13(86.67)	11(100.00)	90(90.00)
무기를 사용한 위협	7(36.84)	17(43.59)	11(68.75)	8(53.33)	6(54.55)	49(49.00)
신체적인 폭행	14(73.68)	29(74.36)	14(87.50)	11(73.33)	8(72.73)	76(76.00)
강간	11(57.89)	30(76.92)	15(93.75)	13(86.67)	11(100.00)	80(80.00)
5번 이상의 강간	10(52.63)	19(48.72)	10(62.50)	8(53.33)	8(72.73)	55(55.00)
성구매자에 의한 강간	11(57.89)	24(61.54)	13(81.25)	8(53.33)	10(90.91)	66(66.00)
성구매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강간	12(63.16)	23(58.97)	13(81.25)	12(80.00)	9(81.82)	69(69.00)
포르노그래피 비디오나 책에 있는 것을 하도록 시킴	11(57.89)	23(58.97)	12(75.00)	7(46.67)	5(45.45)	60(60.00)
포르노그래피에 이용당함	0(0.00)	5(12.82)	10(62.50)	3(20.00)	4(36.36)	22(22.00)
폭력의 경험(신체적 위협,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인 폭행, 강간)	19(100.00)	36(92.31)	16(100.00)	14(93.33)	11(100.00)	96(96.00)

(%)

성매매업소에서 경험하는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인 위협

90%의 응답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당했고, 49%는 방망이나 병, 칼 등의 무기로 위협을 당했다. 포주나 인신매매범들은 여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위협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들먹인다. 가족에 대한 위협은 피해자들을 더욱 더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한 응답자는 위협을 당한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저를 때리거나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협박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언니의 이름이나 주소까지 다 대면서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처럼 끌고 오겠다고 협박이었어요. 한번은 도망친 적도 있었죠. 업주는 집으로 계속 협박전화를 했어요. 엄마에게 저를 내놓거나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죠.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발로 다른 업소를 찾아가서 선불금을 받아서 빚을 갚았어요.

다른 여성들을 감금하고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른 여성들을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도망쳤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종종 다른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고 감금된다.

2) 신체적인 폭력

응답자들의 76%가 얻어맞고, 차이고, 몽둥이로 맞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구타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였을 때 주로 일어났다. 응답자들은 생리를 하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심지어는 성매매로 인해 생식기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거부할 수 없었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것은 포주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포주나 감시인들은 즉시 욕설을 퍼부었고, 구타를 했다. 응답자들은 구타 직후에 곧 바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곤 했다고 진술했다. 한 응답자는 이러한 구타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미아리에 들어간 첫날부터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밑이 붓고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들었어요. 한번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손님방에서 나와서 포주에게 울면서 부탁했어요. 하지만 포주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저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주에게 울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포주가 만들어 놓은 사소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포주들은 업소의 규칙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강요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억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규칙은 보통 벌금규정이나 일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들끼리의 말다툼 금지나 포주에 대한 말대꾸 금지, 심지어는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있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응답자들은 벌로써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가장 심각한 폭력은 응답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리거나 도망쳤다가 붙잡혔을 때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도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로써 심한 구타를 당했고, 무기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타는 보통 감금이나 음식제한, 인신매매와 함께 가해졌다. 한 응답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일한 업소는 과천에 있는 단란주점이었어요. 저는 다른 아가씨들과 함께 업소에서 떨어져있는 숙소에서 생활했어요. 늘어나는 빚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집으로 갔는데, 포주

가 쫓겨나고 와서 저를 붙잡아 갔어요. 잡혀서 차로 끌려갈 때에도 맞았고, 업소에 도착해서도 맞았죠. 업소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업소로 팔릴 때까지 영업이 끝나면 그 곳에 갇혀 있었어요.

3) 강간

응답자들의 80%가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후 강간을 당했고, 55%는 5회 이상의 강간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66%의 응답자들은 성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69%는 성구매자 외의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등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이러한 업소 안에서의 강간은 대부분 구타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포주나 감시인에 의한 강간은 피해여성이 그 업소에 있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업소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강간 피해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함께 연대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무력감, 죄책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4) 포르노그래피

60%의 응답자들이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성구매자로부터 포르노비디오나 책에 나와있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였으며, 22%의 응답자들은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제작하는 데 이용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창가의 포주들은 이러한 업소에 처음으로 유입된 응답자들에게 포르노그래피 비디오나 책에 나와있는 것을 보여주며 성구매자에게 해야 하는 성적 서비스를 교육하고 강요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교육받은 대로 성구매자들 앞에서 '나체쇼'를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해야 했다. 성구매자들 중에는 비디오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강요에 수반되는 신체적 위협이나 구타는 응답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업주나 성구매자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들었다.

5)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응답자들은 집결지역의 성매매업소에서 더 많은 성적·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매일 상대해야 하는 성구매자의 수도 집결지역과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집결지역 외의 성매매업소로서 대표적인 유흥주점과 티켓다방 등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이 성구매자를 상대해야 하는 숫자는 보통 2~3일에 한 명이고, 많아도 하루에 2명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결지역에서는 하루에 적은 날이 2~3명, 많은 날은 20명 이상의 성구매자를 상대해야 했다. 응답자들은 집결지역의 성매매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표 13>를 보면 응답자들의 74%가 기지촌과 사창가를 포함하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에 집결지역의 성매매업소로 팔렸다. 10대에서 20대에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후, 몇 년 사이에 빚은 급격히 늘어났고, 포주들은 늘어난 빚을 이유로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집결지역으로 팔아버렸다.

<표 13> 연령별 집결지역 경험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집결지역 경험 있음	9(47.37)	23(58.97)	16(100.00)	15(100.00)	11(100.00)	74(74.00)
집결지역 경험 없음	10(52.63)	16(41.03)	0(0.00)	0(0.00)	0(0.00)	26(26.00)

(%)

응답자들이 설명하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2001년 경기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31개 시·군중 14개 시·군에 총 33개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¹¹⁾,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16개 시·도 모두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다. 집결지역의 수로 볼 때, 경기도와 전라북도, 서울특별시가 가장 심각했다.

4.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욕구

응답자들에게 현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96%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고, 87%가 포주로부터의 보호를, 85%가 피난처를, 84%가 개인상담을, 82%가 건강보호를, 76%가 법률적 지원을, 48%가 동료지원을, 47%가 직업훈련을 원하였다. 공창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0%였다. 조사결과는 <표 14>와 같다.

공창제도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성매매를 허용하는 특정지역을 만드는 것이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한 응답자는 공창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미아리나 청량리 같은 데는 공창지역이나 마찬가지로잖아요. 이런 데가 더 힘들어요. 이런데 들어가면 우리들은 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일도 힘들고 손님과 성관계를 많이 해야 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이런 곳에서 포주들의 말은 법이나 마찬가지로요. 공창지역에서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11) 새움터(2001), 61쪽.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5개국에 대한 조사결과인 <표 15>과 비교했을 때, '법률적 지원'과 '포주로부터의 보호'의 항목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적 지원에 대한 욕구'에서 한국이 75%인데 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태국은 58%, 잠비아는 54%, 미국은 43%였다. '포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욕구'에서 한국인 87%인데 비해, 잠비아는 41%,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3%, 미국은 28%, 태국은 21%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적·사법적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조차 쌍벌죄로 처벌받고 있고, 경찰은 피해자신고를 받고도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곤 하며, 검찰은 인신매매나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자들을 거의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도 경찰도 인신매매범죄조직이나 성매매 범죄조직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법률적 지원이나 포주로부터의 보호는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욕구이다.

건강보호에 대한 욕구도 다른 5개 국가에 비해 한국이 비교적 높았다. 잠비아(88%)를 제외하면, 한국(82%)이 남아프리카공화국(69%)이나 미국(58%), 태국(43%), 터키(38%)보다 높았다. 한국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의료보호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나 감금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병원을 이용할 자유조차 박탈당한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14>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욕구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탈성매매	18(94.74)	38(97.44)	16(100.00)	13(86.67)	11(100.00)	96(96.00)
집 또는 안전한 장소	14(73.68)	33(84.62)	15(93.75)	13(86.67)	10(90.91)	85(85.00)
직업훈련	9(47.37)	20(51.28)	11(68.75)	4(26.67)	3(27.27)	47(47.00)
약물/알콜치료	3(15.79)	13(33.33)	6(37.50)	6(40.00)	1(9.09)	29(29.00)
건강보호	11(57.89)	32(82.05)	15(93.75)	14(93.33)	10(90.91)	82(82.00)
동료들의 지지	11(57.89)	22(56.41)	6(37.50)	4(26.67)	5(45.45)	48(48.00)
개인상담	17(89.47)	29(74.36)	14(87.50)	13(86.67)	11(100.00)	84(84.00)
자기방어훈련	9(47.37)	27(69.23)	8(50.00)	7(46.67)	5(45.45)	56(56.00)
법률적 지원	17(89.47)	38(97.44)	10(62.50)	7(46.67)	4(36.36)	76(76.00)
공창제도	2(10.53)	6(15.38)	0(0.00)	2(13.33)	0(0.00)	10(10.00)
자녀보호	8(42.11)	11(28.21)	8(50.00)	9(60.00)	6(54.55)	42(42.00)
포주로부터의 보호	17(89.47)	35(89.74)	16(100.00)	12(80.00)	7(63.64)	87(87.00)

(%)

<표 15> 5개국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욕구

	국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 국	터키	미 국	잠비아
탈성매매	89%	94%	90%	88%	99%
집 또는 안전한 장소	72%	60%	60%	78%	94%
직업훈련	75%	57%	46%	73%	97%
약물/알콜치료	46%	32%	6%	67%	37%
건강보호	69%	43%	38%	58%	88%
동료들의지지	58%	49%	24%	50%	63%
개인상담	61%	68%	46%	48%	53%
자기방어훈련	61%	60%	12%	49%	41%
법률적 지원	58%	58%	조사 안됨	43%	54%
합법화	38%	28%	4%	44%	8%
자녀보호	48%	45%	20%	34%	87%
포주로부터의 보호	33%	21%	조사 안됨	28%	41%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새옴터 상담소의 현장지원서비스(39%)나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은 동료와 친구의 소개(21%)를 통해 상담소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피해여성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현장지원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포주들이 성매매업소를 철저히 하게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통제하고 있고, 성매매피해여성들 대부분이 감시나 감금상태에 놓여있어서 피해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6> 연령별 상담소를 알게 된 경위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상담소의 현장지원서비스	1(5.26)	4(10.26)	8(50.00)	15(100.00)	11(100.00)	39(39.00)
상담소의 지원을 받은 친구소개	4(21.05)	13(33.33)	4(25.00)	0(0.00)	0(0.00)	21(21.00)
인터넷 정보검색	0(0.00)	0(0.00)	1(6.25)	0(0.00)	0(0.00)	1(1.00)
TV	8(42.11)	7(17.95)	0(0.00)	0(0.00)	0(0.00)	15(15.00)
1366	4(21.05)	6(15.38)	0(0.00)	0(0.00)	0(0.00)	10(10.00)
타 여성단체의 연계서비스	1(5.26)	5(12.82)	3(18.75)	0(0.00)	0(0.00)	9(9.00)
여성부	0(0.00)	2(5.13)	0(0.00)	0(0.00)	0(0.00)	2(2.00)
경찰	1(5.26)	1(2.56)	0(0.00)	0(0.00)	0(0.00)	2(2.00)
타 여성복지상담소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

IV.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성매매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가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성매매는 결코 '여성의 성적해방'이나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견해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삶에서 신체적·성적 폭력은 매우 심각했다. 응답자들의 96%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90%의 응답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당했고, 49%가 방망이나 병, 칼 등의 무기로 위협을 당했다. 76%는 얻어맞고, 차이고, 몽둥이로 맞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 특히 도망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을 때, 감금되고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응답자들의 80%가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후 강간을 당했고, 55%는 5회 이상의 강간을 당했으며, 66%의 응답자들은 성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69%는 성구매자 외의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등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60%의 응답자들이 포르노비디오나 책에 나와있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였으며, 22%의 응답자들은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제작하는 데 이용당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든지 간에 성매매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여성들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포주나 인신매매자,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96%의 응답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고, 90%가 공창제도에 반대했다는 것은 공창제도가 성매매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님을 증명한다.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아닌, 포주와 성구매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폭력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교육이나 정보제공, 콘돔 나누어주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피난처제공 및 법률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현장지원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성매매여성들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

김현선(세움터 대표)

I. 성매매여성들의 실태

1. 외국의 연구사례

○ 미국에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4세이고¹²⁾, 적어도 75%의 성매매여성들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들이며¹³⁾, 90%이상의 성매매여성들이 포주의 통제 하에 있고¹⁴⁾, 70%의 성매매여성들이 손님이나 포주, 다른 남성들에 의해 강간을 당해왔고¹⁵⁾,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의 성매매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성매매여성들은 매주 한 번 꼴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¹⁶⁾

○ 캐나다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성매매여성들의 사망률은 무려 40배 이상이다.¹⁷⁾

○ 남아프리카 및 태국, 터키, 미국, 잠비아에서 성매매여성들의 73%가 육체적 폭력을 당했고, 62%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으며, 67%의 여성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증상을 가지고 있고, 92%의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76%의 여성들이 성매매의 합법화에 반대하였다.¹⁸⁾

○ 노르웨이에서 성매매여성들의 73%가 육체적 폭행, 강간, 감금, 살인협박과 같은 폭력적 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 27%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폭력을 목격하였다.¹⁹⁾

12) M.Silbert and A.M.Pines. Occupational Hazards of Street Prostitution, & Crimes, Just, Behav. 195(1981)

13) WHISPER Oral History Project, 1987

14) S.B. Satterfield. Clinical Aspects of Juvenile Prostitution. 15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9: 126. (1981)

15) D. Leidholdt. Prostitution: A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136. (1991)

16) Hunter, S.K. Letter(1994), Patriarchy: notes of an expert witness, Common Courage Press.

17) Baldwin, M.A.(1992), Split at the root: prostitution and feminist discourses of law reform,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18) Farley, Melissa and Baral, Isin(1998),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Prostitution Research and Education.

19) Cecilie Hoigard & Liv Finstad(1992), Back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The Pennsylvania

2. 한국의 성매매

○ 120~200만명(YMCA, 한국여성민우회).

○ 2001년 7월 12일 미국무성은 미의회에 제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3등급(최하위급)으로 판정함.

○ 인신매매, 감금, 성매매강요, 폭행, 위협, 강간, 화대착취, 불법채무 등의 인권침해.

○ 성매매여성들의 96%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81%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73%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다. <표 I>은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²⁰⁾

<표 I> 성매매여성들이 경험한 폭력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신체적 위협	16(84.21)	34(87.18)	16(100.00)	13(86.67)	11(100.00)	90(90.00)
무기를 사용한 위협	7(36.84)	17(43.59)	11(68.75)	8(53.33)	6(54.55)	49(49.00)
신체적인 폭행	14(73.68)	29(74.36)	14(87.50)	11(73.33)	8(72.73)	76(76.00)
강간	11(57.89)	30(76.92)	15(93.75)	13(86.67)	11(100.00)	80(80.00)
5번 이상의 강간	10(52.63)	19(48.72)	10(62.50)	8(53.33)	8(72.73)	55(55.00)
성구매자에 의한 강간	11(57.89)	24(61.54)	13(81.25)	8(53.33)	10(90.91)	66(66.00)
성구매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강간	12(63.16)	23(58.97)	13(81.25)	12(80.00)	9(81.82)	69(69.00)
포르노그래피 비디오나 책에 있는 것을 하도록 시킨	11(57.89)	23(58.97)	12(75.00)	7(46.67)	5(45.45)	60(60.00)
포르노그래피에 이용당함	0(0.00)	5(12.82)	10(62.50)	3(20.00)	4(36.36)	22(22.00)
폭력의 경험(신체적 위협,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인 폭행, 강간)	19(100.00)	36(92.31)	16(100.00)	14(93.33)	11(100.00)	96(96.00)

(%)

○ 96%가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고, 90%가 공창제도(규제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표 II>는 성매매여성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이다.²¹⁾

State University Press.

20) 김현선(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64쪽.

21) 김현선(2002), 89쪽.

<표 II> 성매매여성들의 욕구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탈성매매	18(94.74)	38(97.44)	16(100.00)	13(86.67)	11(100.00)	96(96.00)
집 또는 안전한 장소	14(73.68)	33(84.62)	15(93.75)	13(86.67)	10(90.91)	85(85.00)
직업훈련	9(47.37)	20(51.28)	11(68.75)	4(26.67)	3(27.27)	47(47.00)
약물/알콜치료	3(15.79)	13(33.33)	6(37.50)	6(40.00)	1(9.09)	29(29.00)
건강보호	11(57.89)	32(82.05)	15(93.75)	14(93.33)	10(90.91)	82(82.00)
동료들의 지지	11(57.89)	22(56.41)	6(37.50)	4(26.67)	5(45.45)	48(48.00)
개인상담	17(89.47)	29(74.36)	14(87.50)	13(86.67)	11(100.00)	84(84.00)
자기방어훈련	9(47.37)	27(69.23)	8(50.00)	7(46.67)	5(45.45)	56(56.00)
법률적 지원	17(89.47)	38(97.44)	10(62.50)	7(46.67)	4(36.36)	76(76.00)
공청제도	2(10.53)	6(15.38)	0(0.00)	2(13.33)	0(0.00)	10(10.00)
자녀보호	8(42.11)	11(28.21)	8(50.00)	9(60.00)	6(54.55)	42(42.00)
포주로부터의 보호	17(89.47)	35(89.74)	16(100.00)	12(80.00)	7(63.64)	87(87.00)

(%); 연령별 전체 응답자수 대비 비율

II. 성매매여성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

-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강요, 착취, 감금, 감시, 협박, 납치, 구타, 강간’ 등과 같은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첫째, 보복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에 비해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둘째, 신고를 하고도 오히려 윤락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성매매범죄로부터 도망쳤을 때 오히려 사기죄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넷째, 수사기관의 유착비리 및 성매매범죄자들의 기망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어 법률체계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등이다. <표 3>과 <표 4>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²²⁾

22) 김현선(2002), 63쪽.

<표 3> 면접당시 법적 지원을 요청한 응답자들의 문제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업주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협박	3(18.75)	13(41.94)	2(50.00)	0(0.00)	0(0.00)	18(34.62)
업주와 소개업자의 협박	0(0.00)	2(6.45)	0(0.00)	0(0.00)	0(0.00)	2(3.85)
업주의 사기죄 고소협박	4(25.00)	5(16.13)	1(25.00)	1(100.00)	0(0.00)	11(21.15)
업주와 소개업자의 고소협박	0(0.00)	4(12.90)	0(0.00)	0(0.00)	0(0.00)	4(7.69)
업주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함	3(18.75)	4(12.90)	0(0.00)	0(0.00)	0(0.00)	7(13.46)
업주의 사기죄 고소로 기소중지당함	0(0.00)	1(3.23)	0(0.00)	0(0.00)	0(0.00)	1(1.92)
소개업자의 사기죄 고소로 기소중지당함	2(12.50)	0(0.00)	0(0.00)	0(0.00)	0(0.00)	2(3.8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처벌의 위협	4(25.00)	2(6.45)	1(25.00)	0(0.00)	0(0.00)	7(13.46)
합 계	16	31	4	1	0	52(100.00)

(%)

<표 2> 성매매의 결과로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경험

	현재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사기전과	0(0.00)	0(0.00)	0(0.00)	1(20.00)	0(0.00)	1(2.50)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전과	4(44.44)	5(35.71)	2(22.22)	0(0.00)	2(66.67)	13(32.50)
사기죄 긴급체포의 경험	1(11.11)	2(14.29)	2(22.22)	0(0.00)	0(0.00)	5(12.50)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험	3(33.33)	5(35.71)	4(44.44)	3(60.00)	1(33.33)	16(40.00)
절도전과	1(11.11)	1(7.14)	0(0.00)	0(0.00)	0(0.00)	2(5.00)
폭력전과	0(0.00)	1(7.14)	0(0.00)	0(0.00)	0(0.00)	1(2.50)
마약전과	0(0.00)	0(0.00)	1(11.11)	1(20.00)	0(0.00)	2(5.00)
합 계	9	14	9	5	3	40

(%)

1. 현행법률의 비실효성

1) 낮은 형량

- 경미한 처벌은 범죄예방 및 방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신고의지를 꺾고 있다.

2)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처벌조항은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단속

을 어렵게 하며 피해자들이 법률적 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 협박이나 보복의 위협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윤락행위자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 처벌로 인한 벌금은 선불금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2. 법률집행상의 문제

1) 낮은 기소율

2)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수사

○ 수사범위의 제한

- 윤락알선자에 대한 수사에 제한되고 있으며, 인신매매범이나 직업소개업자, 감시인, 성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유입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실력적 지배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수사기관들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분리하여 수사하는 것이다. '강요' 및 '실력적 지배' 상황에 대해서도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감금 등의 범죄가 행해졌나를 협소하게 수사함으로써, 대부분의 인신매매범죄자들이 범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직업안정법위반 정도의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인신매매범죄의 경우,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신매매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검찰이 더욱 소극적이다.
- 성매매와 인신매매범죄는 조직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 단순윤락사건으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소극적인 수사

- 성매매범죄자들은 금융회사 위장대출이나 가족명의 차용증의 작성, 가족명의계좌 입금, 각종 각서 등을 통해 선불금사건을 일반채무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소극적이다.
- 감금장치와 석장살만이 감금시설로 인정되며, 창문폐쇄나 CCTV설치, 감시인의 24시간 감시, 골목의 구역별 감시, 외출시 감시인의 동행, 여관거주 시 여관업주의 감시, 탈출에 대한 위협 등과 같은 더 일반적인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무시되고 있다. 특히 성구매자들에 대한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업주가 만들어주는 핸드폰이 감금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오인된다.

3)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문제

○ 공범으로 처벌

-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거나, 폐쇄적인 성매매업소에서 일어난 범죄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종종 피해자들이 포주나 인신매매범과 공범으로 규정되어 윤락행위자로 처벌을 받고 있다. 포주와 폭력배들에 의해 격리되고 억압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범죄의 경우,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성매매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장부나 성구매자 진술 등은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을 윤락행위자로 처벌하는 증거로 규정되고 있다.

○ 사기범죄로 규정

- 부채예속에 의한 매매를 인신매매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빚을 탕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규정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 긴급체포령이 내려지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한다든지, 선불금이 2천만원 정도만 넘어도 긴급수배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한 성매매여성이 검거되면 관할경찰서로 이송된 후, 고소인과 대질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검거와 조사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성매매범죄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또 다시 업소로 끌려가게 되며, 사기죄에 대한 벌금은 선불금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된다.

- 처벌에 대한 위협은 성매매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며,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포기하도록 만든다.

4) 유착비리

- 돈이나 성을 상납받고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편파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수사기관과 성매매관련 범죄자들 간의 불법연계고리는 법률집행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 수사기관의 유착비리는 피해자들에게 불신감을 주게되어 신고나 진술을 가로막는다.

5) 성매매여성들과 성구매자 간의 불균등한 처벌

- 성매매여성들과 비교하여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수사가 행해지며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

3. 피해자의 억압적 심리에 대한 인식부족

- 피해자들이 겪는 진술의 어려움: 진술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을 재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업주와 수사기관 간의 유착비리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극도로 수사기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종종 진술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은 사회성 및 자기방어능력, 진술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10대 청소년을 성인과 비교했을 때, 현실검증력의 부족으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진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더 많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종종 공범으로 규정되며 처벌을 받게 된다.

4. 수사기관과 상담소 간의 협력부족

- 성매매여성들을 조사한 후 상담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채 귀가조치를 함으로써 또다시 범죄자들의 범죄에 노출되곤 한다.
- 수사기관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하여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관들의 활동을 불편해하고 비협조적이다.
- 법무부의 수사지침시달이후, 경찰에서는 상담원의 동석권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검찰은 아직도 동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기죄로 고소당한 여성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의 개입이나 동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III. 개선방안

1.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와 인신매매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가. 처벌강화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수준으로 형량과 벌금을 조정하였으며 국제협약²³⁾이나 다른 국가의 법률을 참고-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 미

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함으로써 형량을 강화하였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군산화재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장부를 보면 한 여성당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화대수입은 빛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모두 포주에게 착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산매춘업소에만 국한된 착취가 아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취구조이다. 이렇게 성매매는 포주나 알선자들에게 큰 이득을 준다. 따라서 이 법은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다.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성매매업소들이 대부분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그 업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은 신고자나 자수자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특정범죄신고자로서 보호하며, 불법수익 몰수금액 중 3%이상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산업형성매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입경로와 성매매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범죄를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이 법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강요·광고·모집·유인·권유·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마.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미국 SAGE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성을 사는 사람들의 재범율은 80%에 이르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4500명중 재범율은 단지 2%에 불과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을 사는 자에 대한

23)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교육하는 것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가 있다.

이 법은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사회봉사·수감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위탁·치료위탁)을 명령한다.

바.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강화

지금까지는 피해자를 성매매업소로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강제나 강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인신매매로 인정되어 왔다. 이것은 강압보다는 좋은 직장에 대한 사기광고나 모집행위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현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사. 국가 간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강화

이 법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신매매의 개념에 국가 간의 이동을 포함시키고 가장 강력한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2) 피해자 인권보호

가. “성매매된 자”의 개념규정

“성매매된 자”란 이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다. 성매매된 자에는 “동의여하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강요행위·심각한 상해·협박·위계·채무관계·마약사용”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나. “성매매된 자”에 대한 면책조항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의 결과로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한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다.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라 이 법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청소년들과 외국인, 그리고 장애인들은 모두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하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국내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나 재판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등 인권보호조항을 강화하였다.

마. 성매매된 자에 대한 지원체계

성매매된 자나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한 긴급보호시설(15일 미만) 및 자립지원시설(6개월 미만, 1회연장 가능),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입퇴소는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시설기간에 상관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성매매행위자중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과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외에도 시설과 상담소의 이용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용을 보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국가 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고, 통역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내국인 성매매된 자와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가. 국가의 의무규정

이 법은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성매매예방교육·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 강화 및 국제공조 등이다.

나. 관련기관의 협력

또한 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부 등과 같은 관련기관들은 범죄수사 및 피해자지원활동과 같은 조치를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성매매종합대책기구의 설치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범죄이며 여러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였을 때 그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원조하기 위하여 여성부 안에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을 신설해야 한다.

이 특별기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정한다.

둘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비정부단체와 협의한다.

셋째, 성매매와 인신매매 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상황, 인신매매자에 대한 기소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넷째, 성매매산업 및 섹스관광산업의 실태와 변화를 조사하고, 방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국제적 인신매매에서 국내로, 그리고 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여섯째, 국제적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일곱째, 성매매의 피해와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에 대하여 대중의 인식증진과 홍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 특별수사전담반의 설치

성매매범죄가 지역과 부서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관할지역과 부서에 제한되지 않는 특별수사전담반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전담반에서는 성매매유입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행위 및 전국적인 인신매매조직망, 범죄에 가담한 모든 성매매업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지침마련

범죄단속이나 범죄자 수사에 대한 담당공무원들, 특히 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사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5. 유착비리근절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6. 상담소와의 연계강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상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상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가 드러나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IV. 법률지원상담

1. 법률지원상담의 종류

- 구조신고 : 신고접수 → 계획세우기(연계망 확인, 가족이나 친구의 협조요구) → 내담자에게 구조시각과 유의사항 알려주기 → 성매매업소 현장조사 및 녹음 → 경찰과 함께 현장출동 → 구조 → 내담자와 상담 → 조사동석(피해자로서 조사받기) → 경찰보호요청 → 일시보호소나 귀가 → 경찰조사동행(2-10회) → 상담종결
- 형사고발 : 전화상담접수 → 초기면접상담(3회이상, 문제파악, 지원체계연계) → 증거채집(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업소녹음, 장부, 협박전화녹음 등) → 진술연습(교육, 집단상담) → 고발 → 경찰조사동행(2-10회) → 상담종결

- 선불금해결 : 전화상담접수 → 초기면접상담(3회 이상, 문제파악, 지원체계연계) → 증거채집(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업소녹음, 장부, 협박전화녹음 등) → 합의 시 유의사항 연습 → 합의동행(내담자의 요청이 있을 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 → 경찰조사 동행(2-10회) → 상담종결
- 사기피고소사건, 윤락행위처벌사건 : 전화상담접수 → 초기면접상담(3회 이상, 문제파악, 지원체계연계) → 증거채집(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업소녹음, 장부, 협박전화녹음 등) → 담당형사 및 검사면담(사건설명, 기소처리문제), 탄원서나 진정서 제출 → 진술연습(교육, 집단상담) → 조사동행(2-10회) → 상담종결
- 사망사건(살해, 업소내의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 등) : 전화상담접수 → 성매매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채집(증인진술서, 숙소감금이나 감시인에 대한 조사, 업소 녹음, 장부) → 경찰수사촉구 → 지자체에 피해보상요구 →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제기(수개월-3년) → 장례 → 고발인조사 또는 소송지원 → 상담종결

2. 유의사항

- 현행법률의 한계 :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연계망을 활용 (단체연명탄원서, 시위, 언론보도 등).
- 성매매 연계고리의 파악 : 직업소개소, 전업소, 다른 여성에 대한 보증 등.
- 경찰과 포주의 유착 : 내담자와의 사전면담, 증거채집, 녹음 등.
- 포주의 협박 : 녹음, 팀협력, 경찰보호요청 등.
- 포주들이 신고사실을 인지한 경우 발생하는 인신매매 : 신속한 구조, 연락관계유지, 현장에 상담원이나 가족 배치.
- 내담자의 불안한 심리로 인한 노출이나 포주에 대한 협력 : 인지행동치료, 팀협력, 경찰과의 협조관계, 녹음 등.

○ 모니터링 :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 재판과정.

○ 후속상담: 포주의 협박, 자립상담.